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명칭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정원에서 제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으로 반영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1명)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2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3.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정부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책임

운영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정원 1명(8급 1명)과 국립종자원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전략작물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략작물육성팀을 설치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식물빅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15. ~ 11.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전략작물육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작물(가루쌀·맥류·두류 등) 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전략작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3. 전략작물의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서류 및 잡곡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
5. 양곡(쌀은 제외한다)의 수출입 관련 업무의 총괄
6.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6항(중전의 제15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 포함,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의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제30조제6항 중 “3명”을 “11명”으로, “(4급 또는 연구관 3명)”을 “(4급 또는 연구관 3명 및 7급 8명)”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팀장”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의 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총계 “634”를 “632”로, 일반직 계 “630”을 “628”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9”를 “20”으로,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16”을 “118”로,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11”을 “107”로,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32”를 “31”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을 “4”로, 사무운영서기보 “19”를 “18”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636”을 “634”로, 일반직 계 “632”를 “630”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

는 시설사무관 “21”을 “22”로,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19”를 “121”로,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주사 · 공업주사 · 방재안전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주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98”을 “94”로,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29”를 “28”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을 “4”로, 사무운영서기보 “19”를 “18”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46”을 각각 “1,138”로,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21”을 “17”로,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수의주사 · 농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50”을 “52”로, 수의주사 “100”을 “99”로, 공업주사보 “3”을 “2”로, 농업주사보 “114”를 “113”으로, 행정서기 “22”를 “19”로,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23”을 “22”로 한다.

별표 8 중 행정서기 · 농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20”을 “24”로, 농업서기 “73”을 “72”로, 행정서기보 · 농업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8”을 “11”로, 운전서기보 “11”을 “10”으로, 방호서기보 “6”을 “4”로, 수의연구사 “95”를 “93”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146”을 각각 “1,138”로,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수의연구

관 또는 농업연구관 “23”을 “19”로,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수의주사 · 농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52”를 “54”로, 수의주사 “103”을 “102”로, 공업주사보 “3”을 “2”로, 농업주사보 “107”을 “106”으로, 행정서기 “23”을 “20”으로,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22”를 “21”로 한다.

별표 9 중 행정서기 · 농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20”을 “24”로, 농업서기 “68”을 “67”로, 행정서기보 · 농업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8”을 “11”로, 운전서기보 “11”을 “10”으로, 방호서기보 “6”을 “4”로, 수의연구사 “92”를 “90”으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78”을 각각 “1,466”으로, 농업주사 “182”를 “179”로, 행정주사보 “44”를 “43”으로, 농업주사보 “151”을 “148”로, 행정서기 “51”을 “50”으로, 농업서기 “191”을 “188”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7”을 “38”로, 사무운영서기보 “14”를 “12”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78”을 각각 “1,466”으로, 농업주사 “177”을 “174”로, 행정주사보 “44”를 “43”으로, 농업주사보 “159”를 “156”으로, 행정서기 “51”을 “50”으로, 행정서기 · 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72”를 “168”로, 농업서기 “195”를 “187”로,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3”을 “38”로, 농업서기보 “26”을 “31”로, 사무운영주사보 “2”를 “1”로, 사무운영서기보 “12”를 “11”로 한다.

별표 12 중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4”를 “6”으로, 사무운영서기보 “3”을 “1”로 한다.

별표 13 중 총계 “126”을 “125”로, 일반직 계 “56”을 “55”로, 3급 또는 4급 이하 “53”을 “52”로 한다.

별표 1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18”을 각각 “215”로, 3급 또는 4급 이하 “217”을 “214”로 한다.

별표 17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3
일반직 계	3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별표 18 제1호를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0일”을 “2026년 12월 30일”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0일”을 “2026년 12월 30일”로 하며, 제4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0일”을 “2026년 12월 30일”로, 같은 항 후단의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4항 및 제7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조제16항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20일

2. 별표 13, 별표 14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31일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전략작물육성팀은 2027년 12월 1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전략작물육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전략작물육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식량산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8명(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4명, 농업주사보 3명, 사무운영주사보 1명)은 2027년 12월 2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2월 3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1의 정원 8명(행정서기·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4명, 농업서기 3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2명을 제외한 별표 11의 정원 20명(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1명, 농업주사보 5명, 운전주사보 1명, 농업서기 2명, 운전서기 1명)은 2025년 6월 16일 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20명(행정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11명, 농업서기 5명, 운전서기보 1명, 농업서기보 2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③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7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4명을 제외한 별표 11의 정원 16명(농업사무관 5명,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6명, 농업서기 5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16명(농업주사 5명, 행정서기·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6명, 농업서기보 5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식량정책실) ① ~ ⑦ (생략)	제11조(식량정책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식량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맥류·두류·서류 및 잡곡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u>	<u><삭제></u>
3. ~ 6. (생략)	2. ~ 5.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7. <u>양곡(쌀은 제외한다)의 수출입 관련 업무의 총괄</u>	<u><삭제></u>
8. (생략)	6. (현행 제8호와 같음)
9. <u>전략작물직접직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u>	<u><삭제></u>
⑨·⑩ (생략)	⑨·⑩ (현행과 같음)
⑪ ~ ⑲ (생략)	⑫ ~ ⑳ (현행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와 같음)
⑪ <u><신설></u>	⑪ <u>전략작물육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전략작물(가루쌀·맥류·두류 등) 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u>
	2. <u>전략작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u>

	3. <u>전략작물의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u> 4. <u>서류 및 잡곡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항</u> 5. <u>양곡(쌀은 제외한다)의 수출입 관련 업무의 총괄</u> 6. <u>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u>
⑮ 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 략) 14. (생 략) 14. <신 설>	⑮ 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14. <u>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 포함,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제3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⑤ (생 략) ⑥ <u>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또는 연구관 3명)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연구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u>	제3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11명(4급 또는 연구관 3명 및 7급 8명) -----

다. 제35조(<u>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u>) ① <u>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의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② <u>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u> 제38조(한시정원) ① <u>농식품 분야 신·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u> ②·③ <u>삭 제</u> ④ (생 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3호 <u>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u> 제2조(<u>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u>) <u>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5명</u>	---. 제35조(<u>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u>) ① <u>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의 단장-----</u> -----. ② <u>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u> -----. 제38조(한시정원)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3호 <u>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u> <삭 제>
--	--

(농업주사보 3명, 사무운영주사보 2명)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농업서기보 3명, 사무운영서기보 2명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동식물빅데이터팀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생략)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2명)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2명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③ (생략) ④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0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2026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 ----- ----- ----- ----- ----- -----	----- ----- 2026년 12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 ----- ----- ----- ----- ----- - 2026년 12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③ (현행과 같음) <삭 제>
--	--	---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7명을 제외한 별표 11의 정원 22명(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1명, 농업주사보 5명, 운전주사보 1명, 농업서기 4명, 운전서기 1명)은 2025년 6월 16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17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22명(행정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11명, 농업서기 5명, 운전서기보 1명, 농업서기보 4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제주사보 10명, 농업서기 5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20명(농업주사 5명, 행정서기·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0명, 농업서기보 5명)으로 본다.	
⑤~⑥ (생략)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⑦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5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0명을 제외한 별표 11의 정원 20명(농업사무관 5명,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	⑤~⑥ (현행과 같음) <삭제>		

신·구정원대비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34	632	-2
일반직 계	630	628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 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9	20	+1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 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 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16	118	+2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 ·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 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 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 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11	107	-4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32	31	-1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	4	+1
사무운영서기보	19	18	-1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36	634	-2
일반직 계	632	630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 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1	22	+1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 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19	121	+2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주 사 · 공업주사 · 방재안전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 주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98	94	-4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29	28	-1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	4	+1
사무운영서기보	19	18	-1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146</u>	<u>1,138</u>	-8
일반직 계	<u>1,146</u>	<u>1,138</u>	-8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u>21</u>	<u>17</u>	-4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수의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u>50</u>	<u>52</u>	+2
수의주사	<u>100</u>	<u>99</u>	-1
·	·	·	
·	·	·	
공업주사보	<u>3</u>	<u>2</u>	-1

농업주사보	<u>114</u>	<u>113</u>	-1
·	·	·	
·	·	·	
행정서기	<u>22</u>	<u>19</u>	-3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u>23</u>	<u>22</u>	-1
행정서기·농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u>20</u>	<u>24</u>	+4
농업서기	<u>73</u>	<u>72</u>	-1
·	·	·	
·	·	·	
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u>8</u>	<u>11</u>	+3
운전서기보	<u>11</u>	<u>10</u>	-1
방호서기보	<u>6</u>	<u>4</u>	-2
·	·	·	
·	·	·	
수의연구사	<u>95</u>	<u>93</u>	-2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146</u>	<u>1,138</u>	-8
일반직 계	<u>1,146</u>	<u>1,138</u>	-8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수의사무관·농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u>23</u>	<u>19</u>	-4
행정주사·공업주사·수의주사·농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u>52</u>	<u>54</u>	+2
수의주사	<u>103</u>	<u>102</u>	-1
공업주사보	<u>3</u>	<u>2</u>	-1

농업주사보	<u>107</u>	<u>106</u>	-1
행정서기	<u>23</u>	<u>20</u>	-3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u>22</u>	<u>21</u>	-1
행정서기·농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u>20</u>	<u>24</u>	+4
농업서기	<u>68</u>	<u>67</u>	-1
행정서기보·농업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u>8</u>	<u>11</u>	+3
운전서기보	<u>11</u>	<u>10</u>	-1
방호서기보	<u>6</u>	<u>4</u>	-2
수의연구사	<u>92</u>	<u>90</u>	-2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478	1,466	-12
일반직 계	1,478	1,466	-12
·	·	·	
·	·	·	
농업주사	182	179	-3
·	·	·	
·	·	·	
행정주사보	44	43	-1
·	·	·	
·	·	·	
농업주사보	151	148	-3
·	·	·	
·	·	·	
행정서기	51	50	-1
·	·	·	
·	·	·	
농업서기	191	188	-3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7	38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14	12	-2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478	1,466	-12
일반직 계	1,478	1,466	-12
농업주사	177	174	-3
행정주사보	44	43	-1
농업주사보	159	156	-3
행정서기	51	50	-1
행정서기·농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72	168	-4

농업서기	195	187	-8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3	38	+5
농업서기보	26	31	+5
사무운영주사보	2	1	-1
사무운영서기보	12	11	-1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4</u>	<u>6</u>	+2
·	·	·	
사무운영서기보	<u>3</u>	<u>1</u>	-2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3]

한국농수산대학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26</u>	<u>125</u>	-1
·	·	·	
·	·	·	
일반직 계	<u>56</u>	<u>55</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3</u>	<u>52</u>	-1
·	·	·	
·	·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4]

국립중자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18</u>	<u>215</u>	-3
일반직 계	<u>218</u>	<u>215</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17</u>	<u>214</u>	-3